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323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시간	근무기간	담당예정 직무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주35시간	2년	보호대상아동 모니터링 및 복지서비스 제공 (양육상황 점검 및 사례관리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 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연령: 만 18세 이상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자 격 요 건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사회복지사(1급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우대사항: 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례관리 가능한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5항)

※ 경력요건의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 합산 불가

4. 보수 수준

○ 근무시간: 주 5일, 35시간, 1일 7시간

○ 보　　수: **25,325천 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연봉하한액 / 수당 별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임용등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0. 1.(목) ~ 10. 15.(목), <09:00~18:00,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성동구청 아동청년과 아동보호팀 (9층) ☎ 02-2286-6667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 사용

※ 성동구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구청 1층 민원여권과 판매)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26. 10. 19.(월)	2026. 10. 26.(월)(예정)	별도 통지	2026. 11. 12.(목)(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 시험방법

가. 1차시험 (서류전형):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면접시험):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첨부1) 1부**

- 응시수수료(9급 상당 5,000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부착(구청 1층 민원여권과 구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 **이력서(첨부2)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첨부3) 1부**

❍ **직무수행계획서(첨부4)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5)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첨부6)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첨부8)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 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 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 <첨부7>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요청

- 해당 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허용하고,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성동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아동청년과(아동보호팀 ☎ 2286-66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